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www.moleg.go.kr	
2014년 2월 5일(수) 업무보고 시작(14:00)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4. 2. 4.(화) 총 8장 ※ 별첨1 인포그래픽 ※ 별첨2 주요 보고내용	
담당자	· 서기관 공은정(02-2100-2552) · 사무관 손문수(02-2100-2539)				

“경제혁신, 법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2014년 법제처 업무보고 -

- ▶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 ▶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
- ▶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법제한류(法制韓流) 확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2월 5일(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 법제처, 국민중심의 정책 입법계획 성공적 마무리

□ 법제처는 금년도 대통령 신년 구상에 따른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입법사항 전반을 총괄·지원하며 140대 국정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의 입법계획 수립 및 집중관리

- 대통령 신년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정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하며,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 (법률 41건, 하위법령 34건)에 대한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수 부처 관련 법령 등 새로운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해 ‘사전입법 집중지원제’ 도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소관부처,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입안팀 구성

○ 140대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성공적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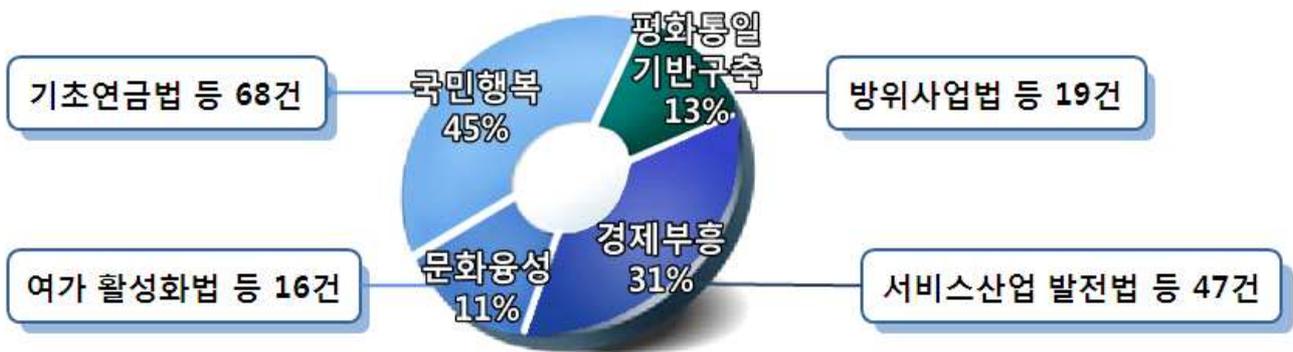
- 2014년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분야별 현황>

○ 국회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 「기초연금법」이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등 국정과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됨에 따라 정책 실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국정성과를 신속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 평균 계류기간은 303일, 계류기간 6개월 이상인 법안이 114건(76%)
-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하여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피드백하고,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대안 마련 시 법리적 쟁점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제출안(287건) 중 225건(78%)이 수정안·대안으로 통과
- 시행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급한 법안은 시행유예기간의 단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 * 공포 후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안이 전체의 76%인 114건

○ 국정과제 효과 체감을 위한 하위법령 제때 마련

- 국회 통과법률의 적기 시행 담보를 위해 제·개정 대상 하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필요한 진행상황을 알리는 신호등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2.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법 대폭 손질

□ 국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 등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 규제, 진입장벽, 숨은 규제(행정규칙) 등을 정비하여 신성장동력 및 경제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 유사 절차 중복 해소

- 해역에서의 매립 시 유사절차 동시 요구
-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

⇒ 절차 단일화

● 진입장벽 개선

- 파산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복권(復權)되더라도 3년간 재등록 제한 (공인노무사법)

⇒ 3년 유예기간 폐지



● 규제 조례·행정규칙 정비

-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인하 (토지가격의 2.5%→2%)
- 60여개 시·군 조례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

⇒ 시·군 조례 정비 지원

유사절차 중복 해소를 위한 정비 필요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 해역에서 준설, 매립 등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요구
 - 위 두 평가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 거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중복되는 절차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중복절차 간소화 필요

진입장벽 개선 필요사례

- 「공인노무사법」
 -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금치산선고나 취소되거나 복권(復權)되더라도 3년간 공인노무사 등록 제한
 -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등록을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한 소지

⇒ 3년간 유예기간 폐지

규제 조례·행정규칙 정비 필요사례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 주차장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토지가격의 0.025→0.02)하였음에도, 60여개 시·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

⇒ 시·군 조례 정비 지원

○ 법치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

- 법치기반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의 토대이므로
-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 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여 법치기반 확립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개선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물적 피해기준 10만원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동일하게 유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면허정지기준 현실화

● 불명확한 규정 정비

- 유선사업자가 수상한 자를 승선시키면 6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법 집행 우려(유선 및 도선사업법)

⇒ 처벌요건 명확화

저 사람 수상한가?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금지!

● 법률에 근거 없는 하위법령 정비

- 법률에는 시험 미 실시 규정 없음
-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의 미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하위법령 삭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정비필요 사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 정지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물적피해 기준이 10만원(10만원 당 면허효력정지 1일)
- 1994년에 정한 기준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간 존치, 피해금액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과잉제재 소지
- ⇒ 면허정지기준 현실화

불명확한 규정 정비필요 사례

- 「유선및도선사업법」
- 유선사업자가 술에 취한 자, 감염병환자, 말이나 행동이 수상한 자 등 승선금지 대상자를 유선에 승선시키면 형사처벌(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승선금지 대상자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 저해
- ⇒ 처벌요건 명확화

법률에 근거없는 하위법령 정비필요 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면제 등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에 위임
 - 하위 법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 이탈 및 국민권익 침해 소지
- ⇒ 하위법령 삭제

3. 고도성장의 법제경험 아시아로 전파하여 법제한류 붐 조성

□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발전법제 및 법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상대국 스스로 우리 법령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주변국에 널리 전파하도록 법제한류(法制韓流)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고도성장 경험’의 맞춤형 법제 제공

-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 농촌근대화 법제, 산업발전 법제 등을 각 나라의 발전 단계별·사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류 상대국에 영문법령정보를 상시 무상으로 제공하며,

아시아 각국 법제제공 사례

-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발간·배포
 - 2011년~2013년에 걸쳐 총 3분야(경제·사회·행정)로 발간,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를 포함하여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역사 총 정리하여 제공
- 아시아 각국에 우리의 법령 제공
 - 베트남(행정절차법), 캄보디아(건설관리법제), 중국(기후변화법제) 등

-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법제교류사업 및 해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행부의 행정한류와도 협업하여 법제도 전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제공시스템(www.law.go.kr)에 대한 전파와 보급으로 우리 법령정보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 : 일 평균 25만명 방문, 월 평균 1억4천만 페이지 뷰 조회

- 법제한류 확산사업은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나눔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 각국에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력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2] 주요 업무보고 내용

① 국정성과 가시화를 위한 “법 제때 만들기”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 입법총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선제적 입법 추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계획 마련(2월말 예정)과 병행하여 입법사항 검토, 국정과제 수준으로 체계적 입법 관리
- 법률안의 연도별 입법계획 수립,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1차년도에 국회 제출 적극 지원
- 하위법령만으로 계획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일괄입법 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 1차 과제(80개)에 대한 입법수요 확인 및 입법계획 수립·추진 중
 - 49개 과제에 대해 75건(법률 41건, 하위법령 34건) 추진
 - 부처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따라 과제 추가 반영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수 부처 관련 법령 등 새로운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해 ‘사전입법 집중지원제’ 도입, 맞춤형 지원
 - * 소관부처, 법제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입안팀 구성

○ 2014년 제출계획 국정과제 법안(70건)의 국회 신속 제출

2014년 제출 국정과제 법안 현황

- 「공약·국정과제 입법계획」 상 2014년 제출계획법안(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51건, 2013년 미제출 법안 19건
 - ※ 국정기조별 분류: 국민행복 37건, 경제부흥 24건, 기타 9건

- 사전심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 제거

○ 국회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국회계류 국정과제 법안(150건) 현황

- 상임위 상정 44건, 상임위 소위 97건, 법사위 9건 계류
- 계류법안의 국정기조별 분류: 경제부흥(서비스산업발전법 등) 47건, 국민 행복(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8건, 문화융성(국민여가활성화법 등) 16건,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방위사업법 등) 19건
- 평균 계류기간은 303일, 계류기간 6개월 이상인 법안이 114건(76%)

구분	6개월 미만 계류	6개월~1년 계류	1년 이상 계류
150	36	63	51

- 공포 후 시행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인 법안이 114건(76%)

구분	3개월 이하	6개월 미만	6개월	6개월 초과	1년 이상
150	34	2	86	7	21

⇒ 국회 장기계류, 장기간의 시행유예로 정책 실행까지 오랜 기간 소요, 일자리 창출 등 국정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

-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 다음 회기 입법추진 대책에 환류하는 **입법추진성과 점검시스템** 구축
*법안 미처리 사유 파악 및 처리대책 수립·시행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대안 마련시 **법리적 쟁점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제출안(287건) 중 225건(78%)이 수정안·대안으로 통과
- 시행준비에 문제가 없거나 정책집행이 시급한 법안은 **시행유예 기간 단축** 검토

○ 국정과제 효과 체감을 위한 하위법령·조례 등 제때 마련

- 국회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제·개정
정이 필요한 하위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 이를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진행상황을 알리는
신호등 체계 구축

<국회통과 국정과제 법률 154건 중 하위법령 마련 필요 법률 현황>

계	마련 완료	마련필요(58건)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83건	25건	26건	25건	7건

○ 법제업무 평가제도 마련

- 정부내 입법절차, 국회 통과노력,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제반의 입법과정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 추진(연구용역 및 국무조정실 협의)

(종전 평가사례) '07년까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입법추진의 계획성, 입법참여 활성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견 반영노력, 법제개선 노력, 중점관리법안 추진실적의 5개 평가항목 9개 지표에 대해 평가 실시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협업 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협업의 절차 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부처협업을 명문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하여 적법한 하위법령 마련 및 원활한 법집행 도모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우회입법 방지 유도

▪ 현행 의원입법 관련 부처협업의 제도

-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전 절차로서 부처협업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의원입법과 관련한 정부내부 의견 수렴

- 국회 개회 전 통과필요 주요 의원입법 조사 및 점검·보고, 부처 간 의견 통일을 위한 협의 강화
- 부처 간 이견 법안의 추진상황 점검·보고, 부처 간 합의가 어려

은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조정 적극 활용

- 통과가능성이 높은 법안 등 주요 의원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확대·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 강화

- 소관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여 통과 필요법안, 부처협의 필요 법안 등 공동 선정 및 수시 점검

* 국무조정실(규제, 당정협조)·기획재정부(예산)·안전행정부(조직)·법제처(법리)

- 정부정책과 배치되거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우회입법의 추진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대응 강화

□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지원 강화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법제 우선 지원

- 국정과제 추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파악, 해당 규정 및 자치법규 마련 필요성을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

<국정과제 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에서 55%로 상향조정(2013. 4. 24. 시행)되었음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종전 기준(51%)을 그대로 유지

<국정과제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2014. 4. 25. 시행)하고 있는바, 조례 마련 필요성 사전 통보, 자치법제 제때 마련 종합 지원 필요

- 국정과제 추진 관련 중앙 부처 모델조례안이나 지자체 조례안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입안 지원 실시
- 국정과제 추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조례의 제때 마련을 위한 진행상황 파악 및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사례 :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모델조례안 검토 지원

<국정과제 83.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
⇒ 안전행정부의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모델조례안」에 대한 검토 지원(2013. 8. 30.)

○ 6기 지방정부 자치법제 기반 확립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

- 자치법규 정비를 원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선정,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종합적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정비 지원, 다른 지자체 자율적 정비 유도·지원

정비 필요 사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 주차장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토지가격의 0.025→0.02)하였음에도, 60여개 시·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

- 자치법규 정비 지원,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 시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정비 '권고안' 제시
- 법령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집행부와 갈등을 초래하는 무리한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을 자치법규 주요쟁점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하여 유사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 방지

②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법 좋게 고치기”

□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

<기본 방향>

- 법치기반은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의 토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는 ---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것”(2014. 1. 스위스 동포 간담회 대통령 말씀 중)

<중점 정비분야>

○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촉진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 규제,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 등을 정비하여 신성장동력 및 경제혁신의 기반 마련

경제 활력을 위한 정비 필요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 해역에서 준설, 매립 등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요구
 - 위 두 평가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 거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중복되는 절차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인노무사법」
 -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금치산 선고가 취소되거나 복권(復權)되더라도 3년간 공인노무사 등록 제한
 -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등록을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한 소지
 -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영업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지키기 어려운 불합리한 법령 등의 정비로 비정상의 정상화 도모

-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규제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법령, 법령 내용이 과도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도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비필요 사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 정지사유인 ‘중대한 사고’의 물적피해 기준이 10만원(10만원당 면허효력정지 1일)
 - 1994년에 정한 기준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간 존치, 피해금액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과잉제재 소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다른 사람의 구조를 요청한 목격자의 위치정보는 경찰관서만이 이용할 수 있음
 - 긴급구조기관(119)의 경우에도 목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업무의 효율화 도모 필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면제 등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
- 하위 법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 일탈 및 국민권의 침해 소지

○ 행정제재 규정의 합리화를 통한 법치기반 강화

-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흠결되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법령, 매출액 대비 과소한 과징금액 등 불합리한 제재규정, 행정제재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과잉제재의 가능성이 있는 법령, 단일 위반행위에 대한 여러 법률에서의 중복제재 등을 집중 정비

행정제재규정 합리화 정비필요 사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 최저 매출액 등급(2,000만원 이하)의 1일 과징금액 5만원(매출액 대비 182%)
- 최고 매출액 등급(100억원 이상)의 1일 과징금액 166만원(매출액 대비 6.1%)
- 매출액 등급간 과징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유선및도선사업법」

- 유선사업자가 술에 취한 자, 감염병환자, 말이나 행동이 수상한 자 등 승선금지 대상자를 유선에 승선시키면 형사처벌(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승선금지 대상자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 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처처분의 상한 및 처분기준 부재
- 자의적인 과잉제재 소지

<추진 방안>

○ 현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 밀착형 법령 중점 발굴·정비

-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현장 간담회,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국민의견 직접 수렴 강화

2013. 6. 26. 법제처장의 외국인주민 현장간담회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KBS 뉴스 방송 등) 건의사항이 즉각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의 금액을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이전 받아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근거를 마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3. 12. 31.)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정비

- 제도개선업무를 추진하는 정부기관(국조실, 권익위, 법제처) 및 주요 민간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등) 간 협업을 위해 구성(2013. 9월)한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내실 있는 본격 운영
- 각 기관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상시 공유하여 기관 간 과제 중복을 최소화하고, 법제처의 사전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과제의 완성도 제고 및 신속한 입법화 지원

○ 신속한 법제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발굴과제는 당해 또는 차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여 과제 발굴과 정비 시점간 시차 최소화

□ 숨은 규제인 행정규칙의 정비

○ 행정규칙에 대한 법리적 통제 강화

-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규제를 규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리적 통제를 보다 강화

○ 경제 관련 행정규칙의 선도적 정비

- 서비스산업 및 투자 분야 등 경제 관련 행정규칙에 규정된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경제

활력 정책을 지원

< 대통령 말씀 >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2014. 1. 6.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전문가 검토·부처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비 업무 추진

정비 필요 행정규칙 사례

-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부 고시)
전문농업경영인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로 신설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제활동에 제약

○ 정비대상 발굴을 위한 민관 협업체제 구축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의, 전경련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연구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기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위축하는 행정규칙 중점 발굴

○ 행정규칙 정비점검반을 설치하여 입법추진 관리

- 법제처에 행정규칙 정비점검반을 설치하여 입법추진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입법추진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응

○ 일몰제 및 행정규칙 등재 관련 시스템 마련

- 일몰제 및 행정규칙 등재를 정부입법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규칙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관 부처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예) 일몰제 도래 기한 1개월 전 부처에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알림서비스 제공

○ 행정규칙 해석제도 도입 방안 검토

- 현행 법령해석제도를 확대하여 행정규칙 해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규칙이 잘못 해석·적용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규칙을 적극 발굴

* 2013년 행정규칙 해석요청이 50건 접수되었으나, 해석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처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가시적 성과 도출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2013년에 마련된 「민법」 및 「행정소송법」 정비안을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여 국민들이 그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한편, 「형법」 정비안을 마련하는 등 다른 기본법 정비 지속적 추진

* 국민의 70.5%가 민법·형법 등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응답(한국리서치, 2013. 12. 총 1500명 대상 법령 인식 조사)

- 「민법」 정비안에 대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2014년 정부입법계획에 추가하는 등 입법 추진 가시화
- ‘「형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형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정비안 마련

「형법」 조문 개선안 예시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礙를利用하여財物의交付를받거나---
(제348조)

‘지려천박(知慮淺薄)’은 어려운 한자어로서 ‘지적능력 부족’이나 ‘판단능력 부족’으로 풀어 쓰고, ‘심신장애(心神障礙)’는 ‘몸과 마음의 장애’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로 규정하는 등 우리말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선

○ 복잡한 법 체계 일괄 정비

- 2013년 '교육 법제 일괄 정비'에 이어, 2014년에는 법 체계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는 '재난 법제' 등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 및 효율적·안정적 법 집행 도모

* 소관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정비 추진

<재난·재해 관련 법령 현황>

- '재난·재해' 관련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20여건을 포함한 총 80여건의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복·상충 우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대형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단편적으로 추가·수정되어 필요한 소방시설 기준의 누락, 대상별·규모별 형평성 미흡 등으로 국민 안전 위협

-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 간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 법령 체계를 간소화

○ 법률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및 권고

- 법률 제명을 일정한 기준 없이 사용하고, 기관별로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법률 인식에 혼란 발생

법률 제명 약칭 사례

- 일정한 기준 없는 약칭
 - ①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②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약칭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법, 상생협력촉진법(언론), 상생협력법(법원 및 현재)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특법(언론), 개발제한구역법(국회 및 행정기관)

- 관련 기관 및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법률 제명 약칭 위

- 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약칭의 기본원칙 및 약칭을 확정
- (가칭)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정한 약칭을 행정기관· 법원·헌재·언론기관 등에 권고
-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약칭 목록 게재 및 사용, 법률 제명 약칭 목록집 발간·배포

③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 널리 알리기”

□ 고도성장 경험의 맞춤형 법제 제공

-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법제 노하우의 맞춤형 제공
 - 3년간 집대성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경제·사회·행정법제)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에 맞춤형 법제도 제공
 - * 태국, 베트남, 몽골 등 ⇒ 농촌근대화 법제, 산업발전 법제 등 각 나라 발전단계별·사업별 맞춤형 지원
- 중동 및 유라시아 등의 신규 협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제 확산
 - * 카자흐스탄(장애인 복지지원 등), 사우디아라비아(산업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 개별 국가에 맞는 법제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IT) 수출 기반 마련

-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에 대한 UN 공공행정상(UN PSA) 추진으로 우리 법령정보 인프라의 우수성 인증 및 홍보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 : 일 평균 25만명 방문, 월 평균 1억4천만 페이지 뷰 조회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령정보기술의 법제한류 성공사례 창출
 - 기 해외 수출 모델인 전자정부 사업 등과 연계
 - * 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 : 2014년 1월 현재 KOICA와 예산지원 협의(사전타당성 조사) 중

□ 체계적 법제교류 기반 마련

- 법제교류의 전제가 되는 영문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 강화
 - 각 기관에 산재된 법령 영문화 실적의 수집·관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통합 제공, 교류 상대국에 상시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영문화 수요를 법제처가 총괄 관리함으로써 중복 번역 등의 비효율 방지
 - * 법제처(정부 및 지자체 법령 영문화 수요 파악) - KOTRA(민간 및 기업의 영문화 수요 파악) - 한국법제연구원(영문 번역 및 DB 공동활용) 협업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 업무 추진
 - 법제관련 기관(대법원, 헌재, 법무부, 법제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공동 법제교류사업 및 해외 교육 사업 등 추진
 - * 몽골, 베트남 등에서 공동 세미나 및 한국 법제 교육 실시 예정
 - 행정한류(안행부)와 협업으로 법제도 전파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ALES) 개최 등으로 교류의 장을 정례화하고, 지원 요청이 많은 아시아 국가에 '행정한류'와 연계한 법제 지원체계로서 해외협력관 파견 추진

□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령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시스템(2013. 12. 개통)을 통하여 세대별로 겪고 있는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문제 등 생활법령정보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공
 - 금융, 투자, 세제 등 전문영역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 제·개정 소식을 전문분야 신문(건설경제신문, 재외동포신문, 영자신문 등) 및 관련 협회·단체 소식지에 맞춤형으로 제공

○ 쉽고 빠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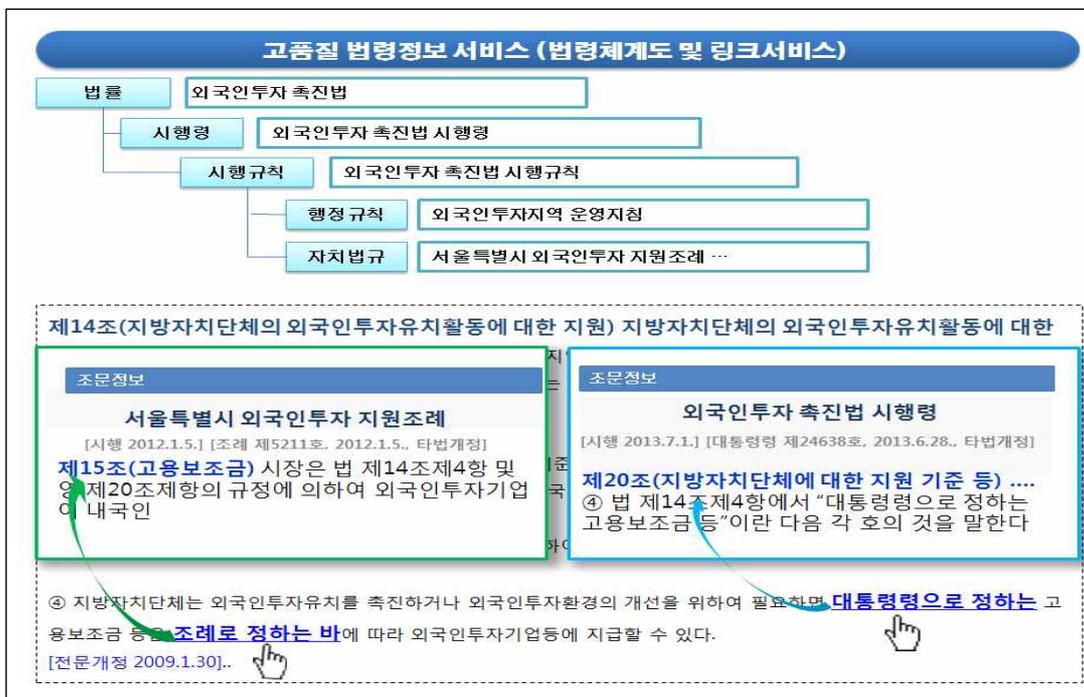
- (신속·적시 홍보)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주요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제도 개선 내용을 매주 국무회의 직후 즉시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부처와 협업)
- (법령캐린더) 국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달 주요 시행 법령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달력 형태로 제공
 - * 범칙금 부과, 양육비 지원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민감한 법령을 선정하여 감성적 그림과 함께 제공
- (웹툰 제작) 국민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화(지면) 뿐만 아니라 웹툰* 형태로 제작
 - * 웹툰(webtoon): 영어 표현의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말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의미
- (언론·방송) 신문, 라디오, 지자체 소식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웹툰을 활용한 법령홍보 사례>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확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법령(연혁·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문법령, 법제처 해석례(의견제시 포함), 법원 판결례, 헌재 결정례 등 수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 한 법령을 중심으로 연관된 법령들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법령체계도와 판례체계도 등을 제공하고, 각 법령정보간 링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고품질 법령정보 개발·제공



○ ‘내 손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개선

- 스마트폰의 일상화에 따라,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 DB 확대(법령, 판결례, 결정례, 해석례에 더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영문법령 등 제공)
- 사용 중인 법령 안에서 연계되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 조문의 링크기능 개선
 - *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 2014년 1월 현재 앱 다운로드 수: 103만명, 공공분야 앱 약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6위의 이용률 기록

□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법제교육 확대

<공무원 교육>

○ 현장·실무 중심의 공무원 법제교육 강화

- 경제 활력 등 정책의 법제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협력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 현장과의 소통 및 해당 기관의 법 역량 강화 도모
-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경제 활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법령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 과정을 신설
- 환경·건축 등 주요 행정분야별로 사례 중심 입안·해석 및 자치법규 통합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분야별 법제역량 강화

<어린이·청소년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법제체험 교육 강화

- 법령만들기, 법령해석 백일장 등 새로운 체험형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
- 법제처 법제관, 로스쿨 재학생 등과 연계한 소규모 그룹 형태의 멘토링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준법교육 실시

○ 소외계층 및 지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제교육 기회 확대

- 소외지역(농어촌, 탄광촌, 도서지역 등) 및 소외계층(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학생 우선 위촉 및 특화 행사를 실시하고 동영상, 교재 등 법제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 *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단, 전국 지역아동 센터 협의회, 한국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법제교육원 설립 및 법제교육 확대 실시

<법제교육원 설립 및 법제교육 확대 실시>

○ 체계적 법제교육 인프라로서의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

- 국정성과는 공무원의 법제도 수립·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실현되는바, 공무원 등의 법령입안·해석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

○ 어린이 등 대국민 법제교육 확대 실시

- 독립된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및 일반국민이 입법의 중요성 및 법치주의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법제교육 확대 실시